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26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진선미 · 이학영 · 이수진
이해식 · 정태호 · 임호선
신정훈 · 임오경 · 최기상
이동주 · 윤관석 · 고용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종사자가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실지 조사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실지 조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명칭과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한편, 실지 조사의 방법·절차·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종사자의 현장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통계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가 미비하여 통계조사인력의 육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됨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6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종사자의 보수가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실지조사”를 “현장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라 통계

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목적
2. 현장조사기간과 장소
3. 통계종사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현장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인(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

우

2.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⑤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계종사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⑨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말한다(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 7.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u>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현장조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종사자의 보수가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u>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
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
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여야 한다.

③ 통계종사자의 처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543호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6조(현장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의 사무
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
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
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목적

2. 현장조사기간과 장소

3. 통계종사자의 성명과 직위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4. 현장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현장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인(대리인 및 관리책임
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
장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조
사를 실시하는 경우

⑤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
계종사자로부터 통계의 작성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
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
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
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⑤ 제2항 또는 <u>제4항</u>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신 설></u>	⑧-----<u>제7항</u>----- ----- ----- -----. ⑨ <u>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